

#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제510호)

# 심사보고서

1998. 11. 27.

총 무 위 원 회

## 1. 삼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. 18 고 성 군 수

나. 화 부 일 자 : 1998. 11. 19

## 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 
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,  
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 
휴가기간까지로 하며,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
보완하기 위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근무상환연령 단축(안 제8조)
  - 정년연장 신청규정 삭제
  - 직권면직에 따른 근무기간의 인정범위 개선보완(안 제10조) : 6월 이상  
→ 복무조례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
  - 휴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(안 제11조)
    -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 명시 :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
    - 휴직의 효력 명시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수급 및 신진대사를 촉진키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
- 근무상환 연령단축, 정년연장 신청규정 삭제, 직권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및 휴직 제도의 개선 보완을 명시한 것으로
- 경상남도 표준안(총무 12100-1107, 1998.9.25)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군 별정직 공무원 수는
- 답 : 5급 1명, 6급 17명, 7급 4명, 8급 7명으로 총 29명임.
- 문 : 안 제10조4호의 "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" 직권면직 규정이 단체장의 남용우려는
- 답 : 상위법 및 표준안에도 명시되어 있고, 인사위원회 절차를 경유하므로 남용 우려는 없음.

#### 6. 토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1998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